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시 전자서명수단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하는 인증서로 특정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2021. 6. 10. 시행 예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인터넷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도입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2021.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전자신고의 종류에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추가하고, 법조문 순서에 따라 각 호의 순서를 정비함(안 제2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된 것과 위 안 제2조의 정비로 인해 전자출생신고를 정한 조문 순서가 제2조제5호에서 같은 조 제2호로 변경된 것을 각 반영하고, 전자신고서를 제출할 때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
-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 전자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말한다)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6조)

3.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http://efamily.scourt.go.kr>” 를 “<https://efamily.scourt.go.kr>”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제5호” 를 “제2호”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것을” 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조제1호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제6조 중 “것을” 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1호나목,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전자신고의 종류) 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p> <p><신 설></p> <p>1. ~ 4. (생 략)</p> <p>5. (생 략)</p> <p>제3조 (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이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 한다)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과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1. 신고서 작성 등</p> <p>가. (생 략)</p> <p>나. 제2조 제5호의 신고(이하 “전자출생신고 “라고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증명정보(모의 성명 · 출생연월일 및 자녀의 성별 · 출생연</p>	<p>제2조 (전자신고의 종류) ----- ----- -----.</p> <p>1. <u>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지 변경신고</u></p> <p>2. (현행 제5호와 같음)</p> <p>3. ~ 6.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제3조 (전자신고 방법) ----- ----- -----https://efamily.scourt.go.kr----- ----- ----- ----- ----- -----.</p> <p>1.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u>제2호</u>----- ----- ----- -----</p>

월일시를 말함)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 3. (생략)

4. 신고서 제출

신고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
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함으로써 신고서를 제
출한다. 다만 정전, 통신상의 장
애, 프로그램의 오류, 전산정보
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
정보처리조직의 가동이 정지되
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
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제4조 (전자신고 처리관서) ① ~ ③

(생략)

<신설>

제6조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 신고

인은 접수번호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전자신
고 처리과정 및 결과(최종 처리 완

-----.

2. · 3. (현행과 같음)

4. -----

----- 것으
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
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 -

-----.

제4조 (전자신고 처리관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제1호의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는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
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제6조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 -----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

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한다)
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인증서를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